

● 제289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심리지원 서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9. 9.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의안번호 976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시장
- 나. 제출일자 : 2019년 8월 7일
- 다.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민의 행복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 3개소(동남권, 동북권, 서남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 나.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형평성 기회제공을 위해 서북센터를 추가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서울특별시 심리지원 서북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추진 필요성

- 서울시민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의 행복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차원의 심리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일반시민의 심리지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건강형평성 기회 제공을 위한 서북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해당분야 전문성과 다년간의 성공적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내용

-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구성 및 동료상담가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일반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민의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위탁유형: 예산지원형(사무형 위탁)
- 수탁기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
- 소재지: 서북권(마포, 용산, 은평, 서대문, 종로, 중구)
- ※ 기존 서울심리지원센터 3개 권역(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구 분	자 치 구
동북권	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구
서남권	강서,구로,금천,관악,동작,영등포,양천구
동남권	강남,강동,광진,서초,성동,송파구
서북권	마포,용산,은평,서대문,종로,중구(예정)

- 규 모
 - 인력구성: 6명 [센터장 1(비상근), 팀장 1, 팀원 4]
 - 시설규모: 면적 165m2이상

구분	총계	사무실	상담검사실	대기실	교육실
설치수(실)	8	1	5	1	1
면적	165m ²	14m ²	15m ² ×5 = 75m ²	36m ²	40m ²
시설기능		직원근무	개인상담, 심리검사 등	힐링제공	집단교육 프로그램

마. 민간위탁기간: 3년 이내(2020.위탁일 ~ 2022.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 소요예산: 230,000천원(2020년 예산 편성 중)
 - 민간위탁금 230백만원(인건비 115, 사업비 80, 운영비 35)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조직담당관 2019.7.1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대상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 ① 시장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 ② 시장은 심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서울심리지원 서북센터 운영 민간위탁 신규 공모계획수립
(보건의료정책과 2019.6.11.)

※ 작성자: 보건의료정책과 정신건강TF팀 민영란 (☎ 2133-7549)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동의안의 제출 사유

- 심리지원센터는 서울시내 3개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민 대상의 심리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서울특별시 심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음. 현재 서북지역에는 심리지원센터가 존재하지 않아 서북지역에 심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설치·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임. 시장이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음.

-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구성 및 동료상담가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일반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민의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가. 물리적 요건

- 심리지원센터는 동남권역 심리지원센터가 2016년 시범운영한 이후 심리지원센터를 4개 권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제안된 안임.

구 분	자 치 구	
동북권	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종로구	
서남권	강서,구로,금천,관악,동작,영등포,양천구	
동남권	강남,강동,광진,서초,성동,송파구	
서북권	마포,용산,은평,서대문,종로,중구(예정)	

- 시설규모는 정원6인(비상근 센터장 1인 포함)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연면적 165m² 이상의 시설을 요건으로 3년 이내의 위탁기관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임.

나. 센터의 설치 목적과 성과

- 2017년의 지역사회건강조사²⁾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타 자치단체의 시민들보다 우울감 경험율이 높고(전국 6.0%, 서울시 7.2%), 스트레스 인지율도 높아(전국 25.1%, 서울시 26.8%) 추후 정신질

2) 질병관리본부(<https://chs.cdc.go.kr/chs/main.do>)

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신과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심리지원센터는 정신과적 문제가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 및 평가를 통해 부적응 증상(분노조절, 우울, 불안) 등을 감소시키고 자기이해의 증진, 성격검사 등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지원프로그램을 토대로 향후 장기적인 우울로 인한 정신 질환 등을 예방하고 시민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등 예방적 정신보건서비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18년의 사업내용을 토대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3개 지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p > .05$)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 효과성이 일부 담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동남센터		동북센터		서남센터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우울(BDI)	25.6	13.3	25.5	13.7	21.0	11.0
불안(BAI)	16.7	9.0	16.5	9.9	14.0	7.0
삶의 만족도	14.0	20.0	14.9	18.4	12.0	16.0

3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³⁾는 민

3)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간위탁 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동 사무가 이에 해당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사무 중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업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하였음.⁴⁾ 또한 동조례 제6조⁵⁾⁶⁾에 따르면 시립병원 등 보건, 건강증진과 관련된 시설과 관련된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심리지원센터의 사업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지 판단해 보고자 할 때는 심리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에 대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이때 전문성 판단 기준은 자격증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객관성을 가진다고 할 것임. 이에 살펴보면 송파심리지원센터를 볼 때, 심리학 박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외에 ‘임상심리전문가’ 라는 모호한 자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도봉심리지원센터의 경우 임상심리전문가 라는 모호성 이외에 자격증이 아닌 학위소지자의 경우가 있음. 양천구 심리지원센터의 경우에도 관련학과 석사 이상 등 자격이 모호한 점이 발

4)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5)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후략)

6) 집행부는 제6조제1호인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실제 운영인력을 중심으로 보면 논외임.

견됨.

※ 임상심리관련 자격증의 경우 국가자격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및 임상심리사 외에 존재하지 않음.⁷⁾⁸⁾ 이에 관련학과 석사 학위 등이 객관적인 자격요건이 될 수 있으나 석사학위가 상담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구심 존재한다 할 것임. 심리학 석사학위 논문이 상담 보다는 심리의 측정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연구동향이기 때문임. 반면, (민간)학회자격증의 경우 종류가 다양한 측면이 있으나 이를 전문가로 인정하는가와 같은 문제는 본 고에서 다를 내용이 아님.

- 다만 관련 분야의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요건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존재한다고 할 것임.

4 종합의견

- 심리지원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서비스되지 않고 있는 서북권역에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서비스 제공측면에서 본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간 3개 권역에서 나타난 성과를 볼 때 효과적으로 사무가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다만, 수행기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자격요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일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7) 심리지원센터가 목표로 하는 대상이 19세 이상의 주민이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은 제외함. 직업상담사의 경우 사업목표와 적합하지 않으며, 전문상담교사 역시 적합하지 않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등이 주된 업무로 동 사무의 목적에 적합한지는 의문이 있다 할 것임.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도 심리사회적지원이 주된 업무 중 하나로 유관 국가자격이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아 제외함.

8) 별론으로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속한 개인 및 가구원 등은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고 하여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우선권을 명문화 하고 있는데 사회적 지원이 필수적인 대상에 대하여 심리평가 등을 전문으로 하는 임상심리사나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심리적 대응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구심 있다고 할 것임.